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이란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양형에서 참작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법 제5조의2에서 형사공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의 동의를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판부가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사 건 : ○○년 공 제○○호

공 탁 자 : ○ ○ ○

주 소:

피공탁자 : ○ ○ ○

주 소: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를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지 표시

1. 사건번호 : ○○경찰서 ○○년 제○○호
 ○○지방검찰청 ○○지청 ○○년 형 제○○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호

1. 사 건 명 :

1. 피의자(피고인) : ○ ○ ○

주민등록번호: 20 . . .

신고인(공탁자) (인)

○○ 지방법원 ○○지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공탁 ○○년 공 제○○호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접수된 서면등을 확인함
 ○○ 지방법원 ○○지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인)

〈형사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공탁에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서면은 기소유예를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기소유예 제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과 손해배상 민사소송과의 관계〉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1) 이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공탁금만큼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즉 가해자는 공탁금은 공탁금대로,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대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2)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다 받고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18920 판결 [공탁금회수청구동의의사표시] 참조).

형사공탁을 하는 가해자는 이러한 리스크(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시〉

사례 1)

피고인 A가 형사재판 중 2천만원 공탁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음 > 피고인 A 최종적으로 유죄 >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 A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음

사례 2)

피고인 B가 형사재판 중 5천만원 공탁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하지 않음 > 피고인 B 최종적으로 유죄 >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1억원을 받음 > B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공탁금 5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